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00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7. 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·원안가결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사항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국 신설사항 반영(안 제3조)

- 관광일자리국 신설(소관부서 : 관광과, 일자리지원과, 문화예술과, 지역경제과, 생활체육과)

나. 소관업무 조정에 의한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3조)

- 안전행정국 ⇒ 행정관리국 (안전업무 도시환경국 이관)
- 기획경제국 ⇒ 기획재정국 (일자리·경제업무 관광일자리국 이관)

다. 마포1번가정책추진단과 마포구정연구단 통합으로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

(안 제3조)

라. 조문 내 중복 단어 삭제(안 제9조)

3. 예산조치: 필요없음

4. 입법예고: 필요없음

5. 개정조례(안):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2호마목(종전의 가목) 중 “공보담당관”을 “관광일자리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안전행정국”을 “행정관리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기획경제국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상임위원의 선임”을 “상임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행정건설위원회 <u><신 설></u> 가. <u>공보담당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(생 략) 다. <u>안전행정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<u>기획경제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. ~ 삼. (생 략) 3. (생 략) ③ (생 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<u>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 사항</u> 마. <u>관광일자리국</u>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행정관리국</u> ----- ----- 라. <u>기획재정국</u> ----- ----- 바. ~ 악. (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<u>상임위원의 선임</u> 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 ② (생 략)	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<u>상임위원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